

18세기 후반 『攷事十二集』의 편찬 경위와 내용*

경 석 현**

1. 머리말
2. 편찬 경위
3. 주요 내용
4. 서술상의 특징
 - 1) 미신적 속설에 대한 경계
 - 2) 異說에 대한 신중한 태도
 - 3) 실용 지식에 대한 관심: '數藝'를 중심으로
5. 맺음말

1. 머리말

서명응의 『攷事十二集』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고사십이집』은 조선후기 達城徐氏 家學의 전승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조선후기 달성서씨의 가학은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18·19세기 실학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徐有槩(1764-1845)가 주목받았고,¹⁾ 그의 학문적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徐命膺(1716-1787)-徐浩修(1736-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9년도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원.

1) 金容燮, 1973 『丁若鏞과 徐有槩의 農業改革論』 『創作과 批評』 8(3); 유봉학, 1986 『徐有槩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奎章閣』 9.

1799)-서유구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달성서씨의 가학이 규명되었다. 요컨대 그 가학의 특징은 博學으로 규정되었다. 그들이 經學 못지않게 상수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 농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근래에는 이 점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실 『임원경제지』는 조선후기 달성서씨 가학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²⁾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문헌이지만, 방대한 분량과 내용 탓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³⁾ 그러다 십수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번역사업의 성과가 잇따라 출간되면서⁴⁾ 근래에는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⁵⁾

『임원경제지』의 모든 내용을 서유구가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 서유구는 당대까지 전해져 온 많은 문헌을 종합·정리하여 『임원경제지』를 펴냈고, 또 곳곳에서 출전도 밝혔다. 그래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연구 중에는 서유구가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에서 유통되던 수많은 지식·정보를 어떻게 체계화하였는가에 주목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서유구의 조부 서명응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서유구는 어려서부터 서명응

2) 金容燮, 2009 『(新訂增補版)朝鮮後期農學史研究』, 지식산업사, 433-434면.

3) 이현창, 2020 『『林園經濟志』에서의 지식 담론의 발전』 『韓國實學研究』 39, 307면, “『임원경제지』의 총체적 연구의 증대한 장애는 방대한 분량과 내용이다.”

4) 지금까지 『본리지』(전3권, 소와당, 2009), 『만학지』(전2권, 소와당, 2010), 『섬용지』(전3권, 풍석문화재단, 2016), 『유예지』(전3권, 풍석문화재단, 2017), 『상택지』(전1권, 풍석문화재단, 2019), 『예규지』(전2권, 풍석문화재단, 2019), 『이운지』(전4권, 풍석문화재단, 2019), 『보양지』(전3권, 풍석문화재단, 2020), 『정조지』(전4권, 풍석문화재단, 2020년) 등이 번역 출간되었다.

5) 최근의 성과로 다음이 참고된다. 심경호·유봉학·염정섭·옥영정, 2011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소와당;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2014·2015 『풍석 서유구 연구 上·下』, 사람의무늬; 김대중, 2018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서유구(정명현·정정기·민철기·전중욱 옮김), 2019 『임원경제지: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뿌리는사람; 정명현, 2019 『조선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에서 구하는 실용적 복고』 『내일을 여는 역사』 77; 조창록, 2019 『해동농서』 이본과 『임원경제지』로의 수용 양상 『韓國實學研究』 38; 조창록, 2020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의 비교 고찰』 『인문과학』 77; 정수환, 2020 『서유구의 학문세계와 학문자세, 그리고 실사구시: 『임원경제지』 『본리지』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41.

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⁶⁾ 『임원경제지』 곳곳에서도 서명응의 저술을 인용했다. 예컨대 『임원경제지』의 음식과 취미 부분은 서명응의 『本史』와 『고사십이집』을 집중적으로 인용했고,⁷⁾ 『遊藝志』의 ‘算法’은 『고사십이집』 제7권 중 ‘數藝’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⁸⁾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더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전승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사십이집』 연구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8-19세기 조선 학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서후기 달성서씨 가학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를 잇는 지식의 체계화 과정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 대를 잇는 지식의 체계화 과정은 문헌의 전승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문헌, 즉 『고사십이집』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사십이집』은 서명응 학문의 특성을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이해하는데에서 필수적인 문헌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명응의 학문은 “이 책 [= 『보만재총서』]의 중심은 先天學이며, 農政·地理 등 實用에 필요한 학문을 포괄하고 있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청조의 고증학이라든지 서양의 지리지 등 많은 서적을 참조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도 이미 그의 학문은 17세기 이래 조선 정통 유학계가 고수했던 朱子主義的 義理之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⁹⁾ 실용학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고증학이나 서양의 과학기술 관련 서적을 탐구하는 태도가 ‘조선의 정통 유학계’가 고수한 학문 성향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서양의 근대적인 자연 지식과 전통적인 상수역학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도식적인 구도가¹⁰⁾ 비판을 받으면서, 서명응의 학문이 12세기 이래의 ‘정리학적 상수역학’이라는 거

6) 정명현, 2019 앞의 논문, 179면.

7) 조창록, 2019 『徐命膺의 농업·일용 관련 저술과 『林園經濟志』로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78.

8) 서유구(정진성·장우석·정명현 옮김), 2017 『임원경제지 유예지 1』, 풍석문화재단, 215-362면.

9) 任侑炅, 1993 『徐命膺의 『保晚齋叢書』에 대하여』 『書誌學報』 9, 95면.

10) 李龍範, 1972 『李漢의 地動論과 그 論據』 『震檀學報』 34; 1976 『金錫文의 地轉論과 그 思想的 背景』 『震檀學報』 41; 1988 『李朝實學派의 西洋科學受容과 그 限界』 『동방학지』 58.

시적 맥락에서 이해되면서 그 보수성과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다.¹¹⁾

상당히 상반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서명응의 학문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두 측면, 즉 학문적 관심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과는 달리 넓고 다양했다는 점 [다양성 또는 진보성]과 그러한 학문적 관심을 전통적인 학문체계[易學]에 입각하여 구조화하였다는 점[보편성 또는 보수성]을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고사십이집』은 이러한 양 측면의 특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다. 예컨대 천문, 지리, 역사, 관제, 외교, 문예, 의례, 군사, 의식, 주 생활,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12門-360題와 같이 상수학에서의 중요한 상수들로 목록화하였다. 서명응은 『보만재총서』 전체의 수록 저서를 先天學을 기반으로 안배했는데,¹²⁾ 그 일종인 『고사십이집』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고사십이집』은 『보만재총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고사십이집』의 편찬 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¹³⁾ 『고사십이집』은 오랜 시간 개정·증보를 거쳐 완성된 문헌이다. 따라서 그 경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고사십이집』이 어떤 문헌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사십이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방대하다. 학문생활, 관직생활, 일상생활 등 18세기 후반의 지식인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하였다. 『고사십이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명응의 넓고 다양한 학문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고사십이집』의 서술상의 특징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것은 서명응이 『고사십이집』을 저술하면서 견지했던 태도일 것이며, 나아가 그의 학문과 삶에 대한 태도에도 연결될 것이다.

11) 박권수, 1998 「徐命膺의 易學的 天文觀」 『한국과학사학회지』 20(1), 75-89면; 문중양, 1999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지식의 성격: 상수학적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1(1), 31-48면.

12) 한민섭, 2010 『徐命膺 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39-41면.

13) 『고사십이집』은 제7권을 제외하고 완역되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국역 고사십이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사십이집』의 국역본은 농촌진흥청, 2014 『고사십이집』 1·2·3, 진한엠앤비 참고.

이 연구가 조선후기 달성서씨 가학 및 서명응의 학문에 대한 탐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편찬 경위

『고사십이집』은, 『攷事撮要』를 개정한 『攷事新書』를 증보한 문헌이다.¹⁴⁾ 따라서 『고사십이집』의 편찬 경위는 『고사촬요』→『고사신서』→『고사십이집』의 개정·증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먼저 『고사촬요』는 1554년(명종 9)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로, 현전하는 類書 중 가장 오래되었다.¹⁵⁾ ‘類書’란 오늘날의 백과사전과 같이 여러 방면에 걸쳐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한 일종의 공구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魏文帝 때 五經과 그 주석서를 집록하고 門類별로 분류하여 황제가 열람하기 편리하도록 편찬한 『皇覽』을 동아시아 유서의 기원으로 본다. 『황람』 이후로 중국의 황제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유서를 편찬케 했고, 특히 개국 초기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官撰 유서를 편찬하여 文治를 표방하는 데에 이용했다고 한다.¹⁶⁾ 한국에서는 대개 중국의 유서를 수입하여 그대로 覆刻하거나 重刊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유서는 약 140종이고,¹⁸⁾ 이 중에서 가장 오

14) 『고사십이집』의 간략한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김영진, 2014 『해제』 『고사십이집』 1, 진한 엠앤비, 16면 참고.

15) 심경호는 한국에서 정보나 시문을 총집하고 분류한 편찬물로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명종 대 魚叔權의 『攷事撮要』와 선조 대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을 꼽았다. 다만 『攷事撮要』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집적했을 뿐 기존의 지식정보를 재정리한 것도, 기존의 지식정보와 경험사실을 대조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심경호, 2018 『조선시대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韓國思想史學』 59, 108면 참고.

16) 최환, 2003a 『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I): 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 『중국어문학』 41, 8-14면.

17) 이창경, 2002 『類書編纂의 展開樣相 考察』 『문화재』 35, 224-226면; 최환, 2003b 『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II):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 『중어중문학』 32, 66면.

18) 최환, 2003b 위의 논문, 73면. 참고로 중국의 유서는 약 700-800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최환, 2003a 앞의 논문, 14면].

래된 문헌이 바로 『고사촬요』이다.

지금까지 『고사촬요』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파악된 적은 없고, 다만 그 서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어숙권은 중국의 『事林廣記』나 『居家必用』과 같은 유서에 착안하여 내용이 소략한 撰者 未詳의 『帝王歷年紀』와 『要集』을¹⁹⁾ 저본으로 삼아 故實을 널리 살피고 見行을 참작하여 事大交隣과 日用尋常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고사촬요』를 지었다. 그리고 당시 領議政 沈連源, 右議政 尹漑, 參判 沈通源, 都憲 [=大司憲] 尹春年 등이 『고사촬요』를 보았으며, 大提學 鄭士龍이 '攷事撮要'라는 이름을 붙였다.²⁰⁾

어숙권이 『고사촬요』를 사대교린 위주로 엮은 연유는 그의 행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어숙권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15세기 후반 평안도 지역의 鉅族 咸從魚氏²¹⁾ 출신이었으나 서얼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文科에 응시하지 못했고, 대신 출중한 漢語·吏文 실력을 바탕으로 종종 대에 吏文學官에 선발되어 承文院에서 오랫동안 관직생활을 하였다는 사실 정도가 알려져 있다.²²⁾

19) 『帝王歷年紀』와 『要集』은 李仁榮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金致雨, 1972 『攷事撮要의 版種考』,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 125면 참고.

20) 『攷事撮要』, 『攷事撮要序』, “人之處世, 動與事接, 事有千萬種, 而聰明有所不及, 則於臨事之際, 不能無遺忘之患, 理所然也. 此事林廣記, 居家必用之所以撰也. 東方雖在一隅, 上以事乎大, 下以交乎隣, 其他若公若私, 不一其事自卿大夫, 而至胥吏, 以及巷居之士, 各有所當知之事, 必待攷閱典故然後, 處之無疑矣. 但事非一種, 而書亦汗牛, 猝難可徵, 頃年, 有所謂帝王歷年紀者, 又有所謂要集者, 俱不知何人所撰而歷年紀則所載太略, 而頗涉於國乘, 要集則詳於不必詳, 而關於不當闕, 覽者恒用是病焉. 叔權不揆不逮, 據其兩書, 廣攷故實, 參以見行, 而摘其最切者, 聚爲一書, 摠若干條, 大要以事大交隣爲主, 而以各種事次之, 皆日用尋常之所不可闕者也. 比於廣記必用, 則頗加簡要焉. 編旣成, 領議政沈相公, 卽沈連源也, 右議政尹相公, 卽尹漑也, 參判沈相公, 卽沈通源也, 都憲尹相公, 卽尹春年也, 見而可之, 大提學鄭相公, 卽鄭士龍也, 發揮一二, 命名曰攷事撮要, 仍令鑄局印之. 夫以聾瞽之撰, 獲被五相公之藻鑑, 至於印行, 豈非萬一之幸乎, 遂書梗概, 俾後人知其所始, 嘉靖甲寅至月日, 咸從魚叔權序.”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攷事撮要』 영조 대 출간본(청구기호: C15~2A)의 서문]

21) 15세기 후반 평안도 지역의 鉅族으로는 咸從魚氏와 平壤趙氏가 있었다. 李泰鎮, 1976 『15世紀 後半期の 鉅族과 名族意識: 『東國輿地勝覽』 人物條의 分析을 통하여』, 『韓國史論』 3, 238면 참고.

22) 어숙권의 생애는 송향미, 1994 『稗官雜記 研究』,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漢文教育專

어숙권의 행적은 그의 제자 閔仁伯(1552-1626)이 남긴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曳尾 魚先生의 이름은 叔權이고 字는 大中이며 咸從 출신이다. 곧 나의 어릴 적 선생님이시다. 어려서부터 힘써 공부하여 典籍에 널리 통하였고, 책 중에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출생이 嫡統이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 처음 漢吏學官을 둘 때 선생이 가장 먼저 여기에 뽑혔는데, 이 관직은 오로지 吏文을 맡아 事大 관련 업무를 하는 자리였다. 선생은 일생의 사업으로써 조선[我國] 宗系의 잘못[惡名]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을 통탄해 하며 『宗系辨誣錄』을 저술하였고, 무릇 奏請使臣의 사행 咨文·奏文이 모두 〈선생의〉 손에서 나왔다. 마침내 그 〈중계변무〉 문제를 해결하고 『大明會典』 전질을 받아오게 되자 전후의 使臣이 아울러 勳籍에 기록되었고, 단지 몇 줄의 글자를 고친 高敬命 또한 기록에 포함되었으나,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끝내는 〈훈적에〉 포함되지 못했으니,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찌하겠나. 나 또한 선생의 만년에 이르러 가르침을 받았는데, 70세 이후에는 班固·司馬遷·韓愈·柳宗元[班·馬·韓·柳]과 같은 이를 누운 채 외위하며 가르치셨다. 당상관[腰金頂玉]들이 門館에 끊임없이 와 절하며 배우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자들이다. 지은 책이 모두 뛰어나고 대략 60여 권 정도인데, 참으로 吏學의 규범[表的]이 되었으나, 병란 중에 없어지고 전하지 않으니 애석하다. 그 외에 『稗官雜記』와 『攷事撮要』가 세상에 전하니 다행이다.²³⁾

吏文學官은 1425년(세종 7) 9월에 처음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承文院 兼官으로 이문을 익히던 인원과 分館된 新及第로서 이문을 익히던 인원을 통합해 吏文學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양반관료들이 이문 학습을 꺼려하여 세조 대 이후로

攻) 碩士學位論文, 2-9면; 李洙仁, 2000 『『稗官雜記』 연구 試論: 『翰臯觀外史』本 『稗官雜記』 完本の 발굴 보고를 곁하여』 『漢文學論集』 18, 151-155면 참고.

23) 『苔泉集』 卷2, 師友錄, 2ㄴ-3ㄴ(韓國文集叢刊(이하, '叢刊') 59책, 20-21면), “曳尾魚先生, 諱叔權, 字大中, 咸從人, 卽余兒時師也. 自少力學, 博通典籍, 於書無所不讀. 以世係非嫡, 不得應舉. 朝廷肇設漢吏學官, 先生首膺是選, 斯官乃專掌吏文, 而爲事大地也. 先生以爲一生事業, 痛我國宗系惡名之不得伸雪, 著宗系辨誣錄. 凡奏請使臣之行, 咨奏并出於其手. 竟得昭雪, 得受大明會典全帙以來, 前後使臣, 并錄勳籍, 只改數行文字之高敬命亦參錄, 而先生已下世, 又無相援者, 終不得與, 其冤枉爲何如哉. 余亦及先生晚年而受業焉, 稀七之後, 如班馬韓柳, 臥誦而訓誨焉. 腰金頂玉之人, 絡繹於門館, 羅拜以請益, 皆少時搦衣者也. 所著千金方六十餘卷, 眞吏學之表的, 而兵燹之中, 散逸不傳, 惜哉. 其餘稗官雜記, 攷事撮要, 行于世, 亦可幸也.”

관련 제도가 형해화되었고, 1525년(중종 20) 吏文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문학관이 다시 설치되었는데, 이때는 양반 서얼들 중 글재주가 뛰어난 자를 이문학관으로 뽑았다.²⁴⁾ 魚孟淳의 서자였던 어숙권이 이문학관에 선발된 것도 이때였다.²⁵⁾

어숙권은 문장에 능한 서얼로서 유명했다. 沈守慶(1516-1599)은 “서얼로서 문장에 능한 자로는 先朝 때에는 魚無跡과 曹伸이 가장 유명했고 근세에는 魚叔權과 權應仁이 또한 유명하다”고 하였고,²⁶⁾ 許筠(1569-1618) 또한 魚叔權을 서얼로서 세상에 유명한 자라고 평가하였다.²⁷⁾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1724년(영조 즉위) 12월 17일(병술) 鄭震僑도 성종 대 이후 서얼 중의 걸출한 인물로 어숙권을 든 바 있다.²⁸⁾ 魚叔權은 이러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이문학관에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어숙권은 이문학관에 선발되어 외교 관련 업무를 보았다. 특히 宗系辨誣를 일생의 사업으로 삼았고, 『宗系辨誣錄』이란 문헌도 지었다. 『중계변무록』은 未詳의 문헌인데, 1574년(선조 7) 5월 質正官으로 북경에 다녀온 趙憲(1544-1592)이 사행 중에 『중계변무록』을 보았다는 짧은 기록이 있다.²⁹⁾ 여기에서 1394년(태조

24) 이상 조선전기 吏文學官에 관한 서술은 정다함, 2008 『朝鮮前期 兩班 雜學兼修官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88-96면 참고.

25) 權應仁은 중종 대에 吏文學官이 설치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嘉靖 癸未年 [1523, 중종 18] 문과에서 鄭蕃이 壯元을 하였는데, 大司諫 徐厚가 정번의 가문이 미천하다고 하여 최종 낙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南袞이 정번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 吏文習讀을 별도로 두고, 정번, 柳沆, 魚叔權이 함께 선발시험에 참가하였는데, 유향이 수석을 하고 어숙권이 차석을 하였다는 것이다[『松溪漫錄』 下[14책, 국역 50면-『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3(3판)의 책수와 면수. 이하 인용은 국역과 원문으로 구분]. 한편, 어숙권은 현재 생몰년도 미상인데, 권응인은 어숙권이 午生이라고 했다. 계미년 이전의 午年을 보면, 1510년(중종 5) 庚午年, 1498년(연산 4) 戊午年, 1486년(성종 17) 丙午年 정도가 있는데, 어숙권의 생년은 일단 1498년 무오년이나 1486년 병오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6) 『遺閑雜錄』(3책, 원문 122면), “庶學能文者, 先朝魚無跡曹伸最有名, 近世魚叔權權應仁亦有名.”

27) 『懼所覆頤稿』 卷5, 序, 『題適菴遺稿序』(叢刊 74책, 181면), “我朝以庶出名於世者, 魚無赤, 李孝則, 魚叔權, 權應仁, 李達, 梁大樸最著.”

28) 『英祖實錄』 卷2, 卽位年 12月 17日(丙戌).

3) '태조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宗系の 曲筆 사실이 조선에 전해진 이래 1588년(선조 21) 이를 정정한 『大明會典』 한 질을 받아들 때까지의 우여곡절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우여곡절의 시작부터 1539년(중종 34) 權檣(1478-1548)과 任權(1486-1557)이 奏請使로 명에 다녀온 일까지는 어숙권이 『稗官雜記』에 자세히 기록한 바이기도 하다.³⁰⁾ 추정컨대 『중계변무록』 또한 중계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했던 외교적인 노력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문헌이지 않았을까 한다.

요컨대 어숙권은 이문서관으로서 오랫동안 외교 관련 업무를 보면서, 후임자와 훗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인원을 위해 일종의 업무 참고서격의 유서로 『고사촬요』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촬요』는 자연스럽게 사대교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여기에 관직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관제, 서식, 팔도거리, 지역별 특산물, 약방 등의 내용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고사촬요』는 어숙권이 처음 펴낸 이후 『고사신서』로 개정될 때까지 12차례에 걸쳐 개정·증보되었다.³¹⁾ 기본적으로 『고사촬요』가 과거의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엮은 문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최신 정보로의 증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지속적인 개정·증보의 원인이었다. 명과의 외교 문제나 왕실 종계, 또 역대의 官制에 관한 내용은 관찬 문서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어숙권은 그야말로 '보고 들은 바'를 자세하게 적었고, 그러다보니 일부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鄭經世(1563-1632)는 계유정난과 세조즉위, 佐翼功臣 녹훈에 관한 오류를 지적했다. 1453년(단종 1)에 계유정난이 있었고 2년 뒤인 1455년에 세조가 禪位를 받아 즉

29) 『重峯集』 卷10, 日記, 『朝天日記』, 6ㄴ(叢刊 54책, 348면), "(十七日庚寅) … 午飯于安城驛, 始見宗系辨誣錄."

30) 『稗官雜記』(1책, 국역 417-420면). 어숙권의 『稗官雜記』 또한 외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두종의 해제에 따르면, 明 朱元璋 洪武元年 이래 명에 다녀온 사절과, 요동·일본·대마도·유구 지역에 관련된 유사, 시화, 풍속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그 당시 仕宦, 逸士, 詩人, 문호들의 언행과 才人, 技藝, 축첩, 동요 등에 관한 사실들을 듣고 본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稗官雜記』(1책, 국역 416면의 『稗官雜記』 해제)

31) 金致雨, 1972 앞의 논문, 123면.

위하였는데, 『고사촬요』에는 세조가 즉위한 이후 황보인 등을 죽인 것 [=계유정난]으로 적혀 있어 잘못이라 하였다. 또 세조가 즉위한 해에 桂陽君 李璿 등 41인을 좌익공신에 봉했고, 이듬해 이른바 사육신사건을 고변한 金碩과 鄭昌孫 등을 녹공하였는데, 『고사촬요』에는 세조가 즉위한 해에 김질의 고변이 있었고, 이 증 등을 녹훈한 것으로 적혀 있어 잘못이라 하였다.³²⁾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까닭에 1690년(숙종 16) 5월 李玄逸(1627-1704)은 『고사촬요』의 근거 없는 설을 참조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다.³³⁾

1636년(인조 14) 1월 成均館 大司成 李植(1584-1647)은 『고사촬요』를重修했다. 이식의 중수는 太學士 崔鳴吉(1586-1647)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식에 따르면, 최명길은 1613년(광해군 5) 이후로 事變이 많이 발생하면서 문서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여 大臣 및 提調와 논의한 결과 이식이 『고사촬요』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⁴⁾ 이식은 『고사촬요』가 ‘事大하는 일’을 위주로 승문원의 고실을 정리하여 훗날 고찰할 수 있게끔 했고 日用에 절실한 내용을 부기했으나, 소규모로 掇拾하여 빠진 것이 많은 미완의 책이라며 중수의 필요성을 밝혔다.³⁵⁾ 또 개정·증보의 연혁을 정리했는데, 이로써 보면 1368년[明 太祖 1]부터 1554년[明 世宗 33, 朝鮮 明宗 9]까지의 내용은 어숙권이, 1555년[明 世宗 34, 朝鮮 明宗 10]부터 1585년[明 神宗 13, 朝鮮 宣祖 18]까지의 내용은 典翰 許筠(1551-1588)이, 1586년[明 神宗 14, 朝鮮 宣祖 19]부터 1612년[明 神宗 40, 朝鮮

32) 『愚伏集』 卷14, 雜著, 『攷事撮要考誤』, 10ㄴ-11ㄱ(叢刊 68책, 250-251면), “魯山癸酉, 世祖治皇甫仁, 金宗瑞等推戴瑑之罪, 錄靖難勳鄭麟趾等三十六人, 後二年乙亥, 受禪, 撮要云炳幾即位, 是夜誅仁等, 誤. 乙亥閏六月, 受禪. 九月, 錄佐翼勳桂陽君璿等四十一人. 明年丙子六月, 司藝金碩, 右贊成鄭昌孫上變, 六臣等皆死. 七月, 命佐翼三等功臣鄭昌孫陞二等, 軍器正金碩錄佐翼勳三等, 撮要言乙亥金碩上變, 錄璿等勳, 誤.”

33) 『葛庵集』 卷5, 獻議, 『答禮曹弘文館筭記 庚午五月』, 38ㄱ(叢刊 127책, 471면), “而不可參用撮要無稽之說.”

34) 『澤堂集』 卷9, 序, 『重修考事撮要後序』, 25ㄱ-25ㄴ(叢刊 88책, 154면), “癸丑以後, 事變尤多, 而文書益佚, 太學士崔公鳴吉爲是懼, 議于大臣及諸提調建請, 及今修正, 以植叨列副席, 遂以屬筆.”

35) 『澤堂集』 卷9, 序, 『重修考事撮要後序』, 24ㄴ-25ㄱ(叢刊 88책, 153-154면), “魚叔權久爲學官, 始輯是書. 蓋就槐院掌故, 以存後考, 旁及雜記, 頗切於日用, 而槩以事大爲主. 且業已編年世紀, 不得不兼採軍國事變附見一二, 而小掇大遺, 要爲未完之書也.”

光海君 4]까지의 내용은 校檢 朴希賢(1566-?)이, 1613년[明 神宗 41, 朝鮮 光海君 5]부터 1635년[明 毅宗 8, 朝鮮 仁祖 13]까지의 내용은 이식이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고사촬요』는 이식 이후로도 몇 차례 더 개정·증보되었다.³⁷⁾ ‘지속적인 개정·증보’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고사촬요』가 상당히 인기가 높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며 간행하였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관인·유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였으나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문헌이 없어 개정·증보를 계속해 가면서라도 간행하였다는 의미도 된다.

18세기 이후로는 후자 쪽으로 더 기운 듯하다. 明은 이미 오래 전에 패망해버렸고, 後金에 이어 淸이 중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고사촬요』는 여전히 명과의 사대교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헌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사촬요』는 그 전체의 체제 자체가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 또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바로바로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문헌이었다. 요컨대 세상과 사물에 대한 실용적 지식, 긴요한 지식을 담은 ‘撮要’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고사촬요』는 실용적이지 않은 내용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사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편찬되었다.

『고사신서』는 1771년(영조 47) 校書館 提調를 겸하고 있던 서명응이 15권 7책 분량으로 간행한 類書로, 『고사십이집』의 모태가 된 문헌이다. 『고사신서』의 편찬 경위는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69년(영조 45) 가을 서명응은 교서관 제조가 되었다. 사실 서명응은 같은 해 8월 21일(경오) 弘文館 提學에 제수되었는데,³⁸⁾ 교서관 제조 2명 중 1명은 弘文館 大提學이 겸직하게 되어 있어³⁹⁾ 교서관 업무도 함께 맡게 된 것이다. 서명응이 맡기 약 3년 전부터 교서관은 『고

36) 『澤堂集』 卷9, 序, 『重修考事撮要後序』, 25ㄱ(叢刊 88책, 154면), “魚氏紀年止嘉靖甲寅, 自乙卯至萬曆乙酉, 則故典翰許筠所續編云, 而光海朝, 校檢朴希賢奉朝旨, 纂續紀年, 訖于壬子. … 又續紀年, 自癸丑至乙亥, 則悉做魚氏之舊, 不敢私有起例, 嫌於史也.”

37) 金致雨, 1972 앞의 논문, 136-141면.

38) 『英祖實錄』 卷113, 45年 8月 21日(庚午).

39) 『續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校書館, “提調二員, 一員, 大提學例兼.”

사촬요』를 새로 인출하고자 소략한 옛 판본을 증보하고 산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작업은 3년 간 4명의 제조가 맡았음에도 완성하지 못하였고, 右議政 金陽澤(1712-1777)이 누차 언급하여 서명응이 맡게 되었고, 약 2년 만인 1771년에 비로소 완성하게 되었다. 『고사신서』의 校訂은 김양택과 校理 鄭忠彥(1720-?)이 보았는데, 즉 “번잡하고 쓸데없는 것을 골라내고 긴요한 것을 보태고 門戶를 나누고 나서 교리 정충언에게 맡겨서 함께 교감하게 한 다음 다시 金相國(=김양택)에게 보내 재차 增削 작업을 거친 연후에 판각”하였던 것이다. 체제는 12門으로, 또 분량은 10배 이상인 15권 7책으로 늘어 더 이상 『고사촬요』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없었고, 새롭게 『고사신서』라고 붙였다.⁴⁰⁾

수 년 간의 편집과 교감을 거쳐 완성된 『고사신서』는 天文·地理에서부터 官制와 文藝, 건축, 농업, 원예, 과수, 의약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관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균형 있게 수록되어 실생활에 두루 참고할 수 있는 실용서적이 되었다. 『고사신서』가 출간되자마자 “京鄉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서로 먼저 얻으려고 다투었으며 모두들 하루라도 이 책이 없으면 안 된다”할 정도였다고 한다.⁴¹⁾

그런데 『고사신서』를 온전히 서명응 개인의 편찬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를 겸하기 3년 전부터 『고사촬요』의 개정·증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⁴²⁾ 서명응이 맡기 전에 어느 정도로 개정·증보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3년 동안 4명의 제조를 거치면서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니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서명응은 김양택의 권유로 『고사신서』를 편찬하게 되었는데, 김양택은 ‘개인’ 서명응이 아닌 ‘교서관 제조’ 서명응에게 권유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를 맡게 되면서 『고사신서』 편찬에 임하게 된 것이지, 개인의 의지로 편찬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40)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序, “己丑秋, 余提舉芸館, 先是, 館欲印考事撮要, 以舊本疏略, 謀且增刪, 閱三歲更四提舉, 未就也. 相國金公陽澤, 屢爲言于余, 余, 汰繁冗, 補緊要, 列門戶, 屬校理鄭忠彥, 參訂校勘, 然後歸之相國, 又多損益, 以付諸劂削, 名以考事新書.”; 박권수, 2010 『규장각 소장 『攷事新書』에 대하여』 『규장각』 36, 5면.

41) 『保晩齋年譜』 卷3, 『己丑(1769)五十四歲』(박권수, 2010 위의 논문, 9면에서 재인용)

42) 서명응이 맡고 2년 만에 『고사신서』가 완성되었으니 전체적으로는 5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점에서 『고사신서』는 官撰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서명응이 자신의 『보만재총서』에 『고사신서』를 『고사십이집』으로 개편하여 실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고사신서』의 체제가 12門으로 정해지고 분량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은 분명 서명응 개인의 역량 덕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사신서』가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보만재총서』에 수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고사십이집』의 서문이 참고된다. 서명응은 『고사신서』의 서문에서 편찬경위를 간략히 밝혔는데, 『고사십이집』의 서문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 생략하거나 수정하였다. 즉, ‘相國 김양택이 누차 자신에게 『고사신서』 편찬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점과 ‘다시 相國 김양택에게 보내 재차 增削 작업을 거친 연후에 판각하였다’는 점을 생략하였고, ‘교리 정충언이 參訂校勘하였다’를 ‘교리 정충언이 校勘하였다’로 수정하였다.⁴³⁾ 이러한 편집에는, 『고사십이집』은 확실히 본인의 편찬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음의 『고사십이집』 後序도 참고된다.

처음 내가 澤堂과 遲川이 교정한 어숙권의 『고사촬요』를 개정하여 『고사신서』를 지은 것은 前人의 공을 덮고자 한 것이 아니다. 개정한 바가 열의 일곱 여덟이면 換骨이라 할 수는 있지만 脫胎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감탄하며 말하기를, ‘동방은 하늘이 천혜의 지세와 풍경[形勝]을 만들었고 또 열성조를 이어오며 마련된 제도[制置]가 매우 찬란하여 거의 左海[朝鮮]의 삼대라 할만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제도가 마련된 所以然을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문헌이 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이에 『고사신서』에서 고치고 드러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貴賤·上下에 통행하는 바까지 모두 모아 12집 360제로 이루었으니 마땅히 淸의 수라⁴⁴⁾

43) 『攷事十二集』 卷首, 攷事十二集序(9책, 5면-영인본 『保晚齋叢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의 책수와 면수, 이하 같음), “己丑秋, 余提舉藝館, 先是館欲印故事撮要, 以舊本踈略, 謀且增刪, 閱三歲更四提舉, 未就也, 余爲之汰繁冗, 補緊要, 列門戶屬, 校理鄭忠彥校勘 繡梓名攷事新書.”

44) 조선 초기의 『諸家曆象集』에서는 『山堂考索』을 인용하여 “옛날에 淸數를 논한 것으로 『周易傳義大傳』에서는 360을 1淸의 일수라 하여 1淸의 일수가 360일에 그친다. 『堯典』에서는 1淸은 360일과 6일이라고 하여 1淸의 數가 大傳에서 말한 것보다 6일이 남는다. 杜預

하겠다. 이에 이르러 『고사촬요』를 脫胎했다고 할 수 있으니 비록 태당과 지천 두 분이 다시 작업한다 해도 또한 반드시 『고사촬요』라 이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본래 『고사촬요』로 인하여 있고, 세상에서 환골탈태의 법은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前人 답습을 꺼려하는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故事'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어 훗날의 작가들을 경계하려 한다. 이것으로 『고사십이집』의 後序를 삼는다. 서명응 또 쓰다.⁴⁵⁾

서명응은, 문장과 책은 前人の 것을 답습하면서 換骨奪胎하게 된다고 하면서,⁴⁶⁾ 『고사신서』는 『고사촬요』를 '환골'한 것이고, 『고사십이집』이 그것을 '탈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에서도 서명응이 『고사신서』보다는 『고사십이집』을 더욱 확실한 본인의 저서로 여겼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고사신서』는 1771년(영조 47)에 완성되었고, 『보만재총서』는 1783년(정조 7)에 완성되었으니, 『고사십이집』은 1771년부터 1783년 사이에 편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명응은 평소에 자신의 저술을 상자 속에 보관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일체 보여주지 않다가 1780년(정조 4) 致仕한 이후 이들을 꺼내 본격적으로 『보만재총서』 편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⁴⁷⁾ 이 점에서 『고사십이집』의 편찬 또한 1780년경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보만재총서』를 편

의 長曆에는 周天의 度數가 나오는데, 무릇 365도와 4분의 1도이다. 말하자면 1晷의 도수인데, 그것이 운행하는 것이 부족하여 『堯典』보다 3分을 더 줄었으니, 늘리고 줄인 수치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大傳』에서 말한 것은 正數에서부터 말한 것이고, 『堯典』에서 말한 것은 置閏의 成數에 근본을 두고 말한 것이며, 長曆에서 말한 것은 추보하는 방법에 따라 말한 것이다. 이 또한 曆者는 불가불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諸家曆象集』 卷2, 曆法, 山堂考索)

45) 『攷事十二集』 卷首, 後序(9책, 7-8면), “始余以澤堂遲川, 所訂魚叔權攷事撮要, 更定爲攷事新書, 不欲掩前人之功, 所更定什之七八可名爲換骨, 而謂之脫胎則未也. 旣而歎曰, 東方, 以天設形勝, 又經列聖朝, 制置郁郁彬彬, 殆亦三代於左海, 而尙無一人, 發揮制置之所以然, 其可曰文獻之足乎. 遂就新書, 點綴改竄, 以及乎日用庶事, 貴賤上下, 所通行者, 彙成十二集三百六十題, 當莽之數, 蓋至是而盡脫攷事之胎. 雖使澤遲二公復作, 亦必曰不可冒攷事名也. 然此書本因攷事而有, 而世不知換骨脫胎之法, 徒以蹈襲前人, 爲忌者久矣. 蓋存攷事之名, 俾後之操觚者, 知戒也乎. 是爲攷事十二集後序. 徐命膺又書.”

46) 『攷事十二集』 卷首, 後序(9책, 7면), “詩書禮樂, 獨非古聖人之籬下乎. 是蓋不知文章於蹈襲前人之中, 自有換骨脫胎之法, 使人不覺其蹈襲前人.”

47) 金文植, 1996 『徐命膺 著述의 種類와 特徵』,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竹夫李旻衡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太學社, 132면.

찬하면서 이 체제에 맞게 『고사신서』를 『고사십이집』으로 개정·증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만재총서』 편찬에서의 실무적인 작업은 아들인 서호수·서형수, 손자인 서유본·서유구가 주로 담당했는데,⁴⁸⁾ 『고사십이집』 또한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고사촬요』는 1554년(명종 9) 어숙권이 지은 類書로 사대교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가 이문서관으로서 오랜 세월 외교 관련 업무를 보면서 업무 참고서 격으로 『고사촬요』를 지었던 까닭에 그 내용 또한 명과의 외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고사신서』는 1771년(영조 47)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로 있으면서 『고사촬요』를 개정·증보하여 펴낸 문헌이다. 『고사신서』에는 천문, 지리, 관제, 문예, 건축, 농업, 원예, 과수, 의약 등 일상 및 관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이 폭넓게 수록되었다. 다만, 『고사신서』의 편찬에는 서명응 외에도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서명응의 단독 저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서명응은 『보만재총서』를 편찬하면서 『고사신서』를 다시 『고사십이집』으로 고쳐 수록하였던 것이다.

3. 주요 내용

『보만재총서』는 經史子集의 4부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사십이집』은 이 중 集에 속해 있다. 분량은 총 12권으로 史別의 『緯史』·『本史』와 함께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저술 중 가장 방대하다(〈표 1〉 참고). 『고사신서』에서 『고사십이집』으로 증보되면서 체제와 내용 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고사신서』의 農圃門과 牧養門이 『본사』의 農史 및 蠶史로 각각 분리되었고, 日用門 중 음식 관련 내용이 11권 五六으로 분리되었다. 다음으로 지리, 역사, 成憲, 외교, 문예,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복과 음식, 의학에 관한 내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또 각 권의 맨 앞에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서문 격의 글을 붙인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끝으로 전체적인 체제도 바뀌었

48) 金文植, 1996 앞의 논문, 135면.

다. 『고사신서』는 12문 15권 382항목 1,050면이고, 『고사십이집』은 12문 12권, 360항목 1,226면이다(〈표 2〉 참고).⁴⁹⁾ 이러한 변화들은 한편으로는 농업과 임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분량을 늘려 분리시키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2, 60, 360과 같은 상수학에서의 중요한 상수들로 『보만재총서』의 전체적인 체제를 잡으면서⁵⁰⁾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保晩齋叢書』의 체제

구분	서명	분량	권수	구분	서명	분량	권수
經翼	先天四演	2권	1-2	子餘	史別	12권	23-34
	尙書逸旨	2권	3-4		體禮準	2권	35-36
	詩樂妙契	2권	5-6		先句齊	2권	37-38
	大學直指	1권	7		元音鑰	4권	39-42
	中庸經緯	1권	8		參同攷	6권	43-48
史別	疇史	2권	9-10	集類	攷事十二集	12권	49-60
	緯史	12권	11-22	합계		60권	

〈표 2〉 『攷事新書』와 『攷事十二集』 목차 비교

권	攷事新書	항목	면수	서문	주제	권	攷事十二集	항목	면수	서문	주제
1	天道門	10	39	×	천문	1	子集協紀	16	43	○	천문
2	地理門	7	71	×	지리	2	丑集販章	12	161	○	지리
3	紀年門	2	39	×	역사	3	寅集稽古	9	81	○	역사
4	典章門(上)	13	74	×	관계	4	卯集建官	15	100	○	관계
5	典章門(下)	37	76	×	六曹업무	5	辰集成憲	55	133	○	六曹업무
6	儀禮門	15	109	×	각종의례	6	巳集訝交	32	89	○	외교의례
7	行人門	27	56	×	외교의례	7	午集文藝	24	121	○	문예
8	文藝門	7	51	×	문예	8	未集經禮	24	116	○	각종의례
9	武備門	7	70	×	국방	9	申集立豫	10	95	○	국방
10	農圃門(上)	56	85	×	농업	本史	農史 (本紀·志·世家·列傳)	11권	(800)		농업
11	農圃門(下)	47	56	×	임업화훼						임업화훼

49) 〈표 2〉는 晝蒼錄, 2019 앞의 논문, 253면 〈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0) 서명응은 『保晩齋叢書』 수록 저서의 수와 권수를 先天學을 기반으로 안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한민섭, 2010 앞의 논문, 39-41면 참고.

12	牧養門	10	56	×	양잠목축		蠶史 (本紀·志·列傳)	1권	(57)		양잠목축
13	日用門(上)	22	109	×	의복·음식	10	酉集多能	45	90	○	의복·생활
14	日用門(下)	26	32	×	일상생활	11	戌集五六	28	86	○	음식
15	醫藥門	96	127	×	가정의학	12	亥集千一	90	111	○	가정의학
	계	382	1,050					360	1,226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사십이집』의 각 권의 맨 앞에는 서문격의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해당 권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고, 그 주제가 왜 중요하며, 각 권의 명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가 짚막하게 적혀 있다.⁵¹⁾ 이 글들을 통해 『고사십이집』의 전체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1권 子集 協紀의 주제는 천문이다. 연월일시와 계절, 절기, 방위, 定時, 中星, 晨昏, 각루 등 일상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천문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서명응은 사람의 일은 모두 하늘에 매어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하늘의 節序와 氣候에 따라 농사짓고, 하늘의 晝夜와 陰晴에 따라 활동하며, 하늘의 干支와 剛柔에 따라 관혼상제를 치르니 만사가 모두 하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儒家는 理에 상세하고 曆家는 數에 상세하여, 理와 數를 합하여 회통하면 하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協紀’는 『書經』 「洪範」의 ‘協用五紀’에서 인용한 것으로,⁵²⁾ 옛 성인의 協用五紀의 始事를 들어 理數에 버리[기준]를 세운다는 의미에서⁵³⁾ ‘협기’라고 붙인 것이다.

제2권 丑集 販章의 주제는 지리이다. 한성부를 포함하여 전국팔도의 지리적

51) 참고로 김영진, 2014 『해제』 『고사십이집』 1, 진한엠앤비, 17면에서 『고사십이집』의 서술상 특징 중 하나로 “그 서술방식이 조목마다 총론과 각론으로 질서정연하게 풀이되어 있어 현재의 자연과학서를 읽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그의 아들이나 손자는 물론 당시와 그 이후의 학자들에게 서적 편찬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52) 『書經』, 「洪範」, “初一五行, 次二敬用五事, 次三農用八政, 次四協用五紀, 次五建用皇極, 次六乂用三德, 次七明用稽疑, 次八念用庶徵, 次九饗用五福, 威用六極.”

53) 『攷事十二集』 卷1, 子集協紀(9책, 23면), “人中于天, 故萬事皆天. 天有節序氣候, 而人之耕耘斂穫因之. 天有晝夜陰晴, 而人之動靜出入由之. 天有干支剛柔, 而人之冠婚喪祭依之. … 儒家詳於理, 曆家詳於數, 合理數而會通, 可以知天, 今槩舉古聖人, 協用五紀之始事, 以立綱於理數. 稗子集協紀凡十六題.”

위치와 별칭, 주요 山川과 土産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서명응은, 사람은 땅에서 살고 입고 먹으며 삶을 영위하는데 땅의 통함과 막힘[通蔽]과 오름과 내림[降升]을 모르는 것이 옳겠나면서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販章’은 『詩經』 「大雅」의 ‘爾土宇販章’에서 인용한 것으로,⁵⁴⁾ 吉土로 하여금 土宇[=나라의 땅]의 이치를 크게 밝혀 오래도록 두텁게 한다는 의미이다. 공자의 말씀대로 邦禮는 반드시 문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가 충분히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장’을 짓는다고 하였다.⁵⁵⁾

제3권 寅集 稽古의 주제는 역사이다. 단군조선 이래 삼한과 삼국, 고려의 역사를 기술한 뒤 끝에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후의 陵寢과 忌日을 부기하였다. 서명응은, 東人은 중국의 역사는 익히면서도 東國[東方]의 年代와 國都에 관해서는 까맣게 몰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것은 마치 사람이 다른 집안의 족보 읽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자기 집안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內外와 遠近의 구분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稽古’는 『書經』 「虞書」의 ‘曰若稽古’에서 인용한 것으로, 虞史[=虞書]에서 堯典과 舜典의 맨 첫머리에 ‘옛날을 상고하건대’라고 한 것은⁵⁶⁾ 체통을 존중한 까닭에서 그러할 것이라며, 東國의 일과 능침을 합하여 ‘계고’라고 이름 붙인 것이었다.⁵⁷⁾

54) 『詩經』, 「大雅」, 卷阿, “爾土宇販章, 亦孔之厚矣. 豈弟君子, 俾爾彌爾性, 百神爾主矣. 〈傳〉賦也, 販章, 大明也, 或曰販當作版, 版章猶版圖也. 言爾土宇販章, 既甚厚矣, 又使爾終其身, 常爲天地山川鬼神之主也.”; 同, “鳳凰于飛, 翾翾其羽, 亦集爰止, 藹藹王多吉士, 維君子使, 媚于天子. 〈傳〉興也, 鳳凰, 靈鳥也, 雄曰鳳, 雌曰凰, 翾翾, 羽聲也, 鄭氏以爲因時鳳凰至, 故以爲喻, 理或然也, 藹藹, 衆多也, 媚順愛也.”

55) 『攷事十二集』 卷2, 丑集販章(9책, 67-68면), “人載於地, 衣食於地, 營爲鋪置於地, 而不知地之通蔽降升可乎. … 詩云, 爾土宇販章, 亦孔之厚. 又曰, 藹藹王多吉士, 維君子使, 蓋言使吉士大明土宇之理, 以爲厚於傳久, 而孔子語邦禮必舉文獻之足, 不足以爲言其旨渙哉. 稗丑集販章凡十二題.”

56) 「虞書」는 堯典, 舜典, 大禹謨, 皋陶謨, 益稷의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堯典의 첫 머리에서는 ‘옛 帝堯을 상고하건대[曰若稽古帝堯]’라고, 舜典의 첫 머리에서는 ‘옛 帝舜을 상고하건대[曰若稽古帝舜]’라고 하였다.

57) 『攷事十二集』 卷3, 寅集稽古(9책, 231-232면), “東人習中國之史, 而其於東方之年代國都, 則類多茫昧不以爲耻, 如人好講他人之譜系, 而不識自己門戶之所本原, 未可曰知內外遠近之分也. … 昔虞史編二典, 當世之事, 皆冠以曰若稽古者, 所以尊體統也. 東人而敘東國之事, 且載本朝陵寢, 故稱稽古. 稗寅集稽古凡九題.”

제4권 卯集 建官의 주제는 관직제도이다. 동서반의 품계와 각 아문별 업무와 관직 구성, 전국팔도의 官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응은, 관직제도는 『경국대전』과 『동국문헌비고』 등에 나와 있는데, 이런 문헌들은 여느 시골에 항상 쌓아두는 것이 아니므로 시골의 秀才子는 하늘과 사람의 학문에 대해서는 알아도 조정의 관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를 짓는다고 하였다. ‘建官’은 『書經』 「周書」의 ‘建官惟百’에서 인용한 것으로,⁵⁸⁾ 나랏일을 하는 자들이 건관의 제도를 모르고서 요행히 나가서 벼슬을 한다면 닿는 곳마다 걸리고 거리끼게 될 것이라며 저술의 이유를 밝혔다.⁵⁹⁾

제5권 辰集 成憲의 주제는 제도와 법규이다. 吏·戶·禮·兵·刑·工의 순으로, 吏典에는 권점·천거·포폄과 같은 인사법규가, 戶典에는 양전·전세·조운과 같은 재정·회계법규가, 禮典에는 각종 예제와 과거·장복·서식과 같은 의례법규가, 兵典에는 부신·순경·연병과 같은 군사법규가, 刑典에는 검험·격쟁·결승과 같은 형법법규가, 工典에는 도로·도량·영건과 같은 건축법규가 정리되어 있다. ‘成憲’은 『書經』 「商書」 중 說命의 ‘監于先王成憲’에서 인용한 것으로,⁶⁰⁾ 서명응은 국가의 典章과 故事는 조종조의 크고 원대한 계책이므로 ‘선왕이 이루어 놓은 법도를 잘 살피 후세에 영원히 허물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성헌이라 이름을 짓는다고 하였다.⁶¹⁾

제6권 巳集 訝交의 주제는 외교이다. 육·해상 사행로와 외교문서 양식, 사행별 方物, 외교의례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訝交’는 『周禮』의 ‘掌訝’와 ‘掌交’에서 인용한 것으로,⁶²⁾ 서명응은 사신이나 빈객과 같은 외교 업무가 어려울 것이

58) 『書經』 「周書」, “王曰, 若昔大猷, 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 曰, 唐虞稽古, 建官惟百.”

59) 『攷事十二集』 卷4, 卯集建官(9책, 313-314면), “本朝建官之制, 見於大典著於備考, 新出於官府故事, 而此等文字類, 非鄉黨州閭所常蓄者, 故村秀才子自幼至長, 其於天人學, 猶可得聞, 而乃若本朝官制, 則茫然不能理會, 卽建官之所以然者無論已. … 況居是邦, 行是邦者, 不明乎是邦建官之制, 則幸而出爲世用, 其觸處罣碍固不得言, 雖或不幸而獨善其身, 亦豈不有害於此心全體之明且大者乎. 釋卯集建官凡十五題.”

60) 『書經』 「商書」, 說命 下, “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

61) 『攷事十二集』 卷5, 辰集成憲(9책, 417면), “國家典章故事, 皆祖宗朝, 訂謨遠猷, 而傳說謂, 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者也.”

62) 『周禮』, 秋官司寇, 第5, “掌訝, 掌邦國之等籍以待賓客. … 掌交, 掌以節與幣巡邦國之諸侯,

없을 듯하지만, 『주례』의 장교와 장야는 使命과 僮相의 직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수행했다면서 외교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200년 동안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 남북으로 사신가는 자가 사행의 문서, 예물, 노정에 대해 전혀 뜻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상된 자는 상서, 즉 역관의 입만 보며 역관이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며 양국 외교상의 故事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니, 외교 업무도 천하의 일처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⁶³⁾

제7권 午集 文藝의 주제는 말 그대로 문예이다. 서명응은 공자의 학문은 육예로써 가르침을 삼아⁶⁴⁾ 전에는 육예에 통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재목이었는데, 후대에는 육예의 학문이 폐해지고 행해지지 않아 명망 높은 학자라도 高談性命만을 논할 뿐 세상에 한 가지 일이라도 능히 처리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자질의 잘못은 아니지만 평일에 학습한 바로 말미암아 그 도를 얻지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육예 중 禮는 規式[節文]이 번잡하고, 射와 御는 무예의 근본이긴 하나 번잡함이 더욱 심하여 하나의 편목으로는 삼지 못하였고 故實을 갖춰 별도의 集으로 편찬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문예에서는 樂·書·數의 三藝만이 정리되었다.⁶⁵⁾

제8권 未集 經禮의 주제는 의례이다. 邦禮, 鄉禮, 家禮의 순으로, 방례에서는 종묘제례를 포함하여 국가의 大·中·小祀가, 향례에서는 주현의 社稷, 養老, 鄉

及其萬民之所聚者, 道王之德意志慮, 使咸知王之好惡, 辟行之.”

63) 『攷事十二集』卷6, 巳集訝交(9책, 551-552면), “使只是導達國信而已, 相只是送迎賓客而已, 似若無難易之可言, 然周禮行人之屬, 有掌交者, 以使命爲職, 有掌訝者, 以僮相爲職, 聚精會神, 顛門學習, 若遼之於丸, 秋之於奕, … 邇來二百餘年之間, 昇平日久, 使南北者, 雖於某行文書爲幾度, 某行禮物爲幾起, 古之程路從某至某, 今之程路從某至某者, 亦漫不致意, 其爲相者, 徒仰象胥之口, 象胥曰坐則坐, 象胥曰立則立, 其於兩國交聘之故事, 漠然無所記識, 藉令事出不虞, 瞞程路之迂直如契丹之於富弼, 爭禮物之多寡如楚國之於子產, 則尙何以倉卒應變動中機宜, 如二子之明達敏捷乎, 乃知天下事一有不學未可謂之士也, 稗巳集訝交凡九題.”

64) 『史記』, 『孔子世家』, “孔子以詩書禮樂教,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

65) 『攷事十二集』卷7, 午集文藝(10책, 5면), “孔子之門, 以六藝爲教, 故時身通六藝者, 皆濟世之良材. 後世, 六藝之學, 廢而不行, 則往往有老師宿儒, 高談性命, 不能措一事於世者, 非其資之罪也, 由平日所學習, 未得其道也. 六藝之中, 禮則節文繁縟, 射御又武事之本, 其繁益甚, 俱非一篇, 所能該故, 別爲各集, 特見後篇, 此但舉樂書數三者.”

飲·鄉射禮가, 가례에서는 사대부가의 冠婚喪祭 四禮가 정리되어 있다. 서명응은 禮에는 經과 緯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家鄉邦國이 경이 되면 吉凶軍賓嘉는 위가 된다는 것이다. 예란 天理의 節文인데, 天行에는 경위가 있고, 節文은 하늘 [천]에서 나오니, 이를 본뜬 예 또한 경위가 있다고 하였다. 공자는 예를 너넉하고 크다고 하며 經禮 三百과 曲禮 三千을 경위로 삼았고, 주자는 『儀禮經傳』을 지어 家鄉邦國과 吉凶軍賓嘉를 기강으로 경위로 삼았다고 하였다.⁶⁶⁾ ‘經禮’는 이러한 용례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제9권 申集 立豫의 주제는 군사이다. 서울과 지방의 성곽, 군사적 요충지, 繕械, 중앙과 지방의 軍制, 봉수 등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서명응은 『詩經』에서 ‘하늘에서 장마가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문을 튼튼히 엮어두었다’고 한 것이나, ‘문무를 겸비한 길보는 온 나라의 모범이다’고 한 것은⁶⁷⁾ 모두 입예, 즉 폭우와 등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뜻이라⁶⁸⁾ 군사적 방비를 강조하였다. 중국에서는 황제씨 이래로 많은 兵書가 편찬되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성보, 舟楫, 경외군제, 봉화, 요망과 같은 내용이 중국의 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부류끼리 모아서 선비로 하여금 평상시와 위급한 상황 모두에 대비케 한다고 하였다. ‘立豫’는 『중용』의 ‘豫則立’에서 인용한 것으로,⁶⁹⁾ 개인이 한 몸을 바르게 대비하는 것이 한 나라를 대비하는 要道라고 하였다.⁷⁰⁾

66) 『攷事十二集』 卷8, 未集經禮(10책, 127면), “禮有經有緯, 家鄉邦國爲經, 則吉凶軍賓嘉爲緯, 吉凶軍賓嘉爲經, 則其中節文之委曲者爲緯與, 夫七曜之互相經緯俯仰一致, 夫何故禮者, 天理之節文, 天行有經緯, 故節文之出於天者, 象之而亦有經緯, 孔子稱優優大哉, 經禮三百曲禮三千經緯也, 朱子編儀禮經傳, 以家鄉邦國及吉凶軍賓嘉爲之紀綱經緯也.”

67) 『詩經』, 豳風, 鴟鴞篇,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編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詩經』, 小雅, 六月, “文武吉甫, 萬邦爲憲.”

68) 『攷事十二集』 卷9, 申集立豫(10책, 247면), “詩云,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編戶, 蓋曰有國者, 立豫以待暴也, 詩云, 文武吉甫, 萬方爲憲, 蓋曰爲士者, 立豫以待用也.”

69) 『中庸』, 哀公問政, “凡事, 豫則立, 不豫則廢, 言前定則不跲, 事前定則不困, 行前定則不疚, 道前定則不窮.”

70) 『攷事十二集』 卷9, 申集立豫(10책, 248-249면), “獨我國城堡舟楫與夫京外軍制烽燧瞭望, 凡若此類, 皆中國兵書之所不載者, 今悉類輯, 使爲士者, 平居講究, 處廟堂之上, 何以經理, 當後急之際, 何以備禦, 一一揣摩商度以會之於握奇, 如登孔門之丈席, 受六藝之占訣, 則由是而進, 於文武全才亦不異矣, 子思子曰豫則立, 此正立豫於一身, 以立豫於一國之要道也, 稗申集立豫凡十題.”

제10권 酉集 多能의 주제는 일상생활이다. 거주, 방화, 세탁, 붓, 벼루, 書法 등 집안의 온갖 살림살이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서명응은 중국의 劉基(字: 伯溫, 1311-1375)가 『多能鄙事』를 지었고, 文震亨(1585-1645)이 그 장점만을 묶어 『長物志』를 펴내 무릇 집안의 살림살이부터 붓, 벼루, 거문고, 검 따위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장하는 법을 갖추어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두 책이 그 당연한 법칙은 거의 드러냈지만 그렇게 된 오묘함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였다.⁷¹⁾ 이어서 ‘多能’이 유백운의 『다능비사』에서 명명한 것이긴 하나, 본래는 공자가 “젊어서 천하였기 때문에 비루한 일에 재능이 많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⁷²⁾ 학문을 처음 하는 선비가 한가한 여가에도 일을 함에 항상 성인이 일삼던 바를 잊지 않는다면 자연히 人欲은 날마다 물러나고 天理는 날마다 밝아질 것이라며 그 명명의 의미를 밝혔다.⁷³⁾

제11권 戌集 五六의 주제는 음식이다. 과일, 채소, 죽, 차, 엿, 나물, 절임, 김장, 기름 짜는 법, 고기 익히는 법, 장 담그는 법, 식초 만드는 법, 술 빚는 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서명응은 『周禮』를 인용하여,⁷⁴⁾ 음식 맛의 조화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봄에는 신맛이 많아야 하고 여름에는 쓴맛이 많아야 하고 가을에는 매운 맛이 많아야 하고 겨울에는 짠맛이 많아야 하고, 이를 단맛으로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음식의 품질은 여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六食·六飲·六膳이 그것으로 군자의 음식은 항상 이를 좇아야 한다고 하였다. 서명응은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사람의 몸은 음식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음식은 한 번 그 이치를 잃으면 생명을 상하게 되고 수명을 줄이게 되므

71) 『攷事十二集』 卷10, 酉集多能(10책, 343면), “惟劉伯溫, 著多能鄙事之書, 而文震亨引伸類長, 爲長物志, 自夫室廬器什, 以至筆硯書畫琴劍之屬, 莫不備著其製造收藏之法, 裨益日用多矣. 然二書其於所當然之則, 或庶幾焉而, 若夫所以然之妙, 則一未之發揮.”

72) 『論語』, 子罕, “太宰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 子聞之曰, 太宰知我乎,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君子, 多乎哉, 不多也.”

73) 『攷事十二集』 卷10, 酉集多能(10책, 344면), “此篇, 仍劉之名名以多能, 蓋多能, 本出孔聖, 所稱少也賤, 故多能鄙事之語也. 初學之士, 於閒漫, 事爲常不念[=忘]聖人之所有事, 則自然人欲日退, 天理日明.”

74) 『周禮』, 天官, 食醫, “掌和王之六食六飲六膳百羞百醬八珍之齊. 凡食齊視春時, 羹齊視夏時, 醬齊視秋時, 飲齊視冬時. 凡和, 春多酸, 夏多苦, 秋多辛, 冬多咸, 調以滑甘. 凡會膳食之宜, 牛宜稌, 羊宜黍, 豕宜稷, 犬宜粱, 雁宜麥, 魚宜菰, 凡君子之食, 恒放焉.”

로 미리 분별하고 일상에서 경계하는 것 역시 『주례』의 은미한 뜻이 되기 때문에 무릇 음식을 제조하고, 달이고, 절이고, 반죽하는 등 세세한 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五六’은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단맛의五味와 음식의 六品에서 인용한 것이다.⁷⁵⁾

제12권 亥集 千一의 주제는 의학이다. 의학이론보다는 처방이나 치료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의학 정보, 예컨대 여러 중독을 푸는 법, 음식 독을 푸는 법, 화상치료법, 타박상 치료법, 여러 상처 난 부위의 치료법 등이 정리되어 있고, 두창 치료법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千一’은 『千金方』과 『百一方』에서 한 글자씩 따와 붙인 이름이다. 서명응은, 宋의 范仲淹(字: 希文, 989-1052)도 본래 良醫가 되길 바랐고, 唐의 孫思邈(581-682)과 東晉의 葛洪(字: 稚川, 284-363)이 석굴에서 은둔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천금방』과 『백일방』을 지은 것은 우리 몸을 편안히 하는 법을 天下萬世에 두루 미치도록 한 어진 이의 마음 씀이라고 하면서, 이 ‘천일’은 『천금방』과 『백일방』 두 처방서에서 채록하고 고금 醫家의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밝혔다.⁷⁶⁾

4. 서술상의 특징

1) 미신적 속설에 대한 경계

서명응은 易學에 입각하여 자연학 지식을 체계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⁷⁷⁾ 이

75) 『攷事十二集』 卷11, 戊集五六(10책, 437-438면), “周禮言飲食之和有五曰, 春多酸, 夏多苦, 秋多辛, 冬多醢, 調以滑甘. 其言飲食之品有六, 曰六食六飲六膳, 而結之以凡君子之食恒放焉. 夫士君子, 自有所當用心處, 豈以口體之奉爲心哉. 惟是人身以飲食爲命, 而果蔬之良毒, 禽獸之膻臠, 姑勿論已, 雖其烹調之節, 時物之宜一失其理, 則傷生損壽, 有不勝其悔者, 辨之於早, 謹之於常, 亦君子柄幾之一端. 此周禮眷眷垂戒之微旨, 而宋明之際, 學士大夫, 佔畢伸簡爲書盈架, 凡製造和煎梅塩澆浮等, 至微細事, 莫不詳著, 而該載之, 蓋有故於周禮之五和六品者然也. 稗戔集五六凡二十八題.”

76) 『攷事十二集』 卷12, 亥集千一(10책, 523면), “范希文之願爲良醫尙矣. 如孫思邈葛稚川, 肥遯巖穴, 與當世邈然不相接, 而爲千金方, 爲百一方, 推其所嘗康濟一身者, 以遍及於天下萬世, 仁者之用心也. … 今采千金百一兩方, 參以古今醫家諸書, 稗戔集千一凡九十題.”

77) 박권수, 1998 앞의 논문, 59면.

러한 서명응의 역학적 자연인식은 넓은 범위에서 인간·사회와 자연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상관적 사유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사십이집』에서는 역학적 자연인식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상관적 자연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天人合一의 세계관이다. 예컨대 서명응은 나라에 관직을 세우는 일은 모두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역대의 관제는 반드시 天象과 부합하도록 힘을 썼다고 했다. 漢 明帝 때의 소위 郎官을 하늘의 列宿에 응하도록 한 것이 一例이고, 역대의 諫內각사 또한 자미원 내 木별들에 대응토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承政院은 尙書星의 象이고, 다른 諫內각사 또한 하늘의 별자리에 대응한다고 하였다.⁷⁸⁾ 다른 하나는 五行說이다. 서명응은 오행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다. 예컨대 『산림경제』를 인용하여⁷⁹⁾ 9가지의 辟鼠法을 소개했는데,⁸⁰⁾ 여러 설은 모두 황잡하고 오직 ‘매월 辰日에 쥐구멍을 막으면 저절로 쥐가 없어진다’는 설만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유는 쥐[鼠]는 水에 속하고, 辰은 土에 속하는데 土가 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天地 사이에 五行의 相生과 相克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⁸¹⁾ 또 藥 중에 銅·鐵의 기운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五行 때문

78) 『攷事十二集』 卷4, 闕內各司(9책, 324면), “有國建官, 皆所以代天工, 故歷代官制, 必務上合天象. 漢明帝所謂郎官, 上應列宿, 蓋其一也. 而歷代闕內之有各司, 亦應天之紫微垣內諸星. 至本朝尤秩然, 承政院, 卽尙書星之象也, 奎章閣弘文館藝文館春秋館, 卽柱史星之象也, 漏局, 卽六甲星之象也. 司饗院內醫院, 卽內廚二星一主饗一主醫之象也. 〈歷代太官之屬有食醫者象乎此〉 內司僕寺典設司儀仗庫, 卽附路王良造父諸星之象也, 內兵曹都摠府宣傳官別軍職衛將禁軍將扈衛別將局別將守門將等諸宿衛, 卽東西垣及天棓天槍諸星之象也, 至若東宮之侍講院翊衛司, 則以北極五星之前星爲太子也, 內命婦諸職, 則以北極傍句陳六星, 爲天帝之六宮也, 餘可類推.”

79) 『山林經濟』 卷3, 辟蟲, 辟鼠法.

80) 『攷事十二集』 卷10, 辟鼠要法(10책, 423-424면), “辟鼠法. ① 用木刻猫兒一箇, 以赤鼠屎調綵, 畫之, 鼠見自走. ② 用黑犬血, 和蟹燒之, 諸鼠悉去. ③ 大雄鼠一箇, 割去其勢, 放之, 滿屋自咬鼠死似猫. ④ 荷花梗塞鼠穴, 鼠自去. ⑤ 每月辰日〈西要曰正月辰日〉塞鼠穴則自無鼠. ⑥ 遇寅日, 以物塞鼠穴, 鼠自斷. ⑦ 逐月庚寅日, 壬辰日, 并滿日, 及正月上辰日, 塞鼠穴. ⑧ 三月庚午日, 斬鼠尾取血, 塗梁, 永可辟. ⑨ 牛蒡子殼, 似葦蔬殼, 有刺尖, 有倒鉤, 鼠甚畏之, 着其體, 粘住卽死, 故一名鼠粘子, 置於鼠穴, 可逐鼠.”

81) 『攷事十二集』 卷10, 辟鼠要法(10책, 424면), “諸說類多荒雜, 惟辰日塞穴之說, 頗近理, 以鼠屬水, 辰屬土, 土可克水故也, 大凡天地間, 莫非五行之相生相克.”

이라고 했다.⁸²⁾

서명응의 자연인식은 이처럼 전통적인 상관적 사유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미신적 속설, 특히 拘忌에 관해서는 철저히 경계했다. 16세기 후반의 曹好益(1545-1609)은 “陰陽拘忌는 陰陽家の 설에 구애되어 時日이 좋지 않다고 하는 따위를 이른다”고 하였다.⁸³⁾ 조선에서는 이미 태종 대에 陰陽拘忌를 酷信하여 부모가 죽어도 오랫동안 장사지내지 않는 자도 있다면서 서운관의 음양서 중 不經한 것은 모두 불태우도록 한 일도 있다.⁸⁴⁾ 그러나 당시까지도 민간에서는 여전히 고수되었고, 심지어는 왕실 의례에서도 왕왕 지켜졌다.⁸⁵⁾ 그래서 18세기 후반의 尹愔(1741-1826)는 지금 사람들은 일의 輕重과 大小를 막론하고 누구나 俗忌[=拘忌]를 행동거지와 進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서 동작 하나하나 주고받는 하나하나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拘忌의 설은 모두 허탄하고 망령된 것이라고 했다. 집안에서 구기만을 떠받든다면 반드시 인륜을 무너뜨리고 일을 망쳐서 재앙을 부르고 끝내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⁸⁶⁾

서명응은 사람이 拘忌를 좋아하면 巫瞽에 가깝게 될 뿐 아니라 마침내는 반드시 일을 해치고 나서야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을 해치지 않을 만한 내용 한 두 가지를 책에 적었는데, 程太中の 부인이 ‘귀신이 스스로 복을 치며 굿을 하는 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는 법문이겠는가?’라고 하였듯이 人心이 拘忌

82) 『攷事十二集』 卷12, 藥忌銅鐵(10책, 524면), “危亦林得效方曰, 凡藥不得見銅鐵氣者, 緣肝氣惡之也, 信斯言也, 奚特草木爲然哉, 雖石土火水, 亦必皆然, 而今草木之中, 亦有忌銅鐵者, 亦有不忌銅鐵者, 何也, 陰陽互藏五行互宅, 故草木得木氣偏者自惡銅鐵, 非直爲肝氣惡之也.”

83) 『家禮考證』 卷6, 喪禮, 大斂, “陰陽拘忌, 謂拘忌陰陽家之說, 如時日不利之類.”

84) 『太宗實錄』 卷34, 17年 12月 15日(丙申).

85) 『日省錄』, 英祖 52年 2月 22日(甲子). 孝章[=孝章世子]墓의 改修를 논의하며 3월 절기에 들면 으레 拘忌가 있으니, 5월 단오를 기다렸다가 高麗제를 겸하여 베풀자는 논의였다.

86) 『無名子集文稿』 冊11, 井上問話 11(叢刊 256책, 479면), “試以見聞之所及言之, 凡今之人, 無論事之輕重大小, 莫不以俗忌爲行止進退, 一動一作, 一與一受, 有若不得自由者然. … 一言以蔽之, 曰拘忌之說, 皆誕妄也. 人家若專尙此等說, 則必至於敦倫理敗事爲招禍殃, 而終亦必亡而已矣.”

를 믿지 않으면, 拘忌의 일 또한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⁸⁷⁾ 한편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제10권 酉集多能은 대부분 『(증보)산림경제』에서 인용하였으나 “약을 복용할 때는 시체나 출산부의 더러운 빨래[淹穢]는 보지 말라”와 같은 금기는 옮기지 않았다.⁸⁸⁾ 그리고 일부 옮긴 것은 구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두루 경계하려는 까닭에서였다.

이하 12가지의 물리치는 방법[辟法]에는 혹 方術에 가까운 것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기록하여 갖추어 드러낸 것은 사람들이 그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공자는 ‘많이 듣되 의심 가는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만 신중히 말하면 실수가 적을 것이고, 많이 보되 위험한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만 신중히 행동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라고 하였다.⁸⁹⁾ 만약 많이 듣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으면 어찌 의심나고 위태로운 게 있더라도 가히 잘 빼놓을 수 있겠는가. 이치를 아는 자는 공자의 말로써 이 편을 취하여 재량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⁹⁰⁾

서명응이 方術에 가까워 보이더라도 자세히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선택하게끔 하려는 까닭에서였다. 方術은 拘忌와 같이 不經한 것으로 통하였다.⁹¹⁾ 즉, 서명응은 方術이라도 많이 보고 들어야 의심나고 위태로운 것을 가려 낼 수가 있다면서 자세히 적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명응은 구기와 방술 같은 미신은 철저히 경계하였다.

87) 『攷事十二集』 卷10, 平居雜忌(10책, 427면), “人好拘忌, 不惟近於巫瞽終必害事而後已, 今擇其不甚害事者一二著于篇, 然終不若程太中夫人所謂鬼自擊鼓何與於人之法門, 盖人心不信拘忌, 則拘忌之事, 自不至也.”

88) 『山林經濟』 卷4, 治藥, “服藥, 通忌見死尸, 及產婦淹穢等事.”

89) 『論語』, 爲政, “子張學干祿,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90) 『攷事十二集』 卷10, 辟寒要法(10책, 415면), “以下十二辟法或有近於方術者, 然詳錄而備著之, 欲人自擇於其間也. 孔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若不多聞多見, 豈有疑殆之可厭者乎善. 觀理者, 以孔子之言取裁此篇則得矣.”

91) 예컨대 신유박해 때 참수당한 金建淳이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으나 方術不經한 책 보기를 좋아했다[好看方術不經之書]고 한다[『純祖實錄』 卷2, 元年 4月 20日(丙寅)].

2) 異說에 대한 신중한 태도

서명응의 考證적인 학문 자세는 주지의 사실이다.⁹²⁾ 『고사십이집』 곳곳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고증적인 자세란 기본적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태도를 말한다. 18세기 후반에는 워낙에 많은 양의 지식·정보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⁹³⁾ 그 지식·정보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고증적인 학문태도가 고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철저히 고증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같은 항목이나 사안이라도 참고문헌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서명응은 선협적으로 단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의심된다’ 또는 ‘잘 모르겠다’, ‘문헌이 부족하다’와 같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제8권 未集經禮의 壇壝制度에서 정리한 靈星壇·壽星壇·風雨雷雨壇 제사가 참고된다. 서명응은 각 제단의 규격을 설명한 후 현재 영성단 제사[靈星祀]가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전에는 天神에 대한 제사와 靈星 및 壽星 두 별에 대한 제사를 함께 지냈는데,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 영성사 제사를 지내지 않는지 알 수 없고, 환구단 제사를 중지하면서 함께 중지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또 漢書를 근거로 영성은 농사를 관장하는 별이라고 했는데, 漢 이래로 郡國縣에서는 영성사를 지냈고, 제후국[千乘之國]에서도 농업의 번성을 위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한편 醮星에 대한 제사는 소격서를 혁파하면서 중지되었는데, 영성이 초성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農星인 영성과 左道の 醮星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이상의 설명만을 본다면 영성단 제사를 중지한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제후국에서 영성단 제사를 지내는 근거도 분명하므로, 현재 영성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서명응은 조심스럽게 결론지었다. 즉, “문헌이 부족하고

92) 한민섭, 2010 앞의 논문, 52면.

93) 진재교, 2020 『조선조 후기 유서(類書)의 형성과정과 지식·정보 분류의 지성사(知識史)』 『한국실학연구』 40, 429-432면.

고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니 잘 아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⁹⁴⁾

그리고 제3권 寅集稽古의 檀君朝鮮에 대한 서술도 참고된다. 우선 “이름은 王儉이고 太伯山 檀木 아래에서 태어나 國人이 임금으로 세우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며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동방의 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나라라는 뜻이다. 태백산은 지금의 영변의 묘향산이다.”라고 하여 당시까지 전해지던 단군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단군이 국가를 향유한지 1,212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의 설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수명이 1천세를 넘었다는 설인데 이것은 荒誕하고 不經한 것으로 세대를 누린 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 황제시대의 仙人 廣成子の 수명이 1,200세이고 彭祖의 수명이 800세라는 설인데, 아득한 옛날의 기이한 자취를 후세의 얕은 지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두 가지 설 중 누구의 것이 옳은지 몰라 둘 모두를 적는다고 하였다.⁹⁵⁾

끝으로 제1권 子集協紀의 東國分星에 대한 서술을 보자. 먼저 『漢書』, 『晉書』, 『(新)唐書』에서는 尾宿·箕宿·斗宿의 三宿를 조선의 분야로 삼았는데, 조선의 大儒 徐起(1523-1591)와 趙憲(1544-1592)이 渾天 28宿 전역을 조선에 배당한 東

94) 『攷事十二集』卷8, 壇壝制度(10책, 129-130면), “靈星壇. <靈星即天田, 二星在蒼龍左角之北, 漢書注云, 天田即農祥, 晨見而祭之是也. 主天下之豐穰, 居辰宮之初度, 故農字從豐從辰, 漢高祖八年, 詔御史令郡國縣立靈星祠, 祠在長安城東十里, 常以歲時祀, 以牛蓋太牢也. 壇在南郊.>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四出陛, 一壝二十五步, 燎壇在神壇南地, 廣五尺, 高七尺, 戶方二尺. 壽星壇. <壽星即南極老人星也, 見于濟州地, 壇在南郊.> 制與靈星壇同. 風雲雷雨壇. <風師即箕星也, 雨師即畢星也, 周漢至隋, 只祭風雨二師, 唐天寶中增雷師於雨師之次, 宋元因之, 明洪武二年, 講定並祭, 風雲雷雨壇在南郊.> 方二丈三尺, 高二尺四出陛, 兩壝二十五步, 燎壇在神壇南丙地, 廣八尺, 高一丈戶方三尺. <右並天神之祀, 其靈星壽星二祀今罷, 靈星祀不知何時因何事罷之, 以爲疑於祭天而罷園丘時同罷, 則漢詔既許以郡國縣通祀, 且周制以天府而祭文星之司祿, 以司燿而祭火星之司火, 以小司寇而祭軒轅角之司民者, 誠以祭星與祭天不同也, 今以千乘之國, 爲農民祈農報農於農星, 似未可以祭天疑也, 以爲疑於醜星, 而罷昭格署同罷, 則醜星者, 非祀典之正, 而以左道求福也, 若夫祀典所載農星風雨之祀, 古聖之所册始也, 歷代之所通行也, 風雨之祀, 至今遵行不罷, 則其農星之祀, 似未可以醜星疑也, 文憲不足, 考徵無所姑記, 以俟知者.>”

95) 『攷事十二集』卷3, 檀君朝鮮(9책, 232-233면), “檀君 <諱王儉, 生于太伯山檀木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國號朝鮮, 言東方爲日初出鮮明之國也. 太伯山今寧邊妙香山也.> 戊辰 <元年即唐堯二十五年, 教民編髮蓋首, 定君臣男女飲食居處之制, 命彭吳治國內山川, 以奠民居, 彭吳碑在牛首州, 今春川府也.> 甲戌 <即夏禹十八年, 禹會諸侯於塗山, 檀君遣子扶婁入朝.> 甲子 <即商武丁八年, 檀君入阿斯達山爲神, 一說周武王元年己未,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都唐藏京, 後隱阿斯達山化爲神, 阿斯達山即今文化九月山, 唐藏京亦在文化縣東, 檀君廟俱在九月山及平壤, 本朝尊平壤廟爲崇靈殿.> 享國一千二百十二年. <檀君享國, 凡有二說, 其一曰, 壽過千歲云者, 荒誕不經, 此蓋傳世歷年也, 其一曰, 廣成子壽一千二百歲, 彭祖壽八百歲, 鴻荒異跡未可以後世淺知斷之也, 二說未詳孰是, 今兩存之.>”

國朝鮮圖를 창안하였고, 당시 이를 믿는 자가 반이고 믿지 않는 자가 반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믿지 않는 자의 논리는 조선이 28수 전체를 배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가 않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믿는 자의 논리는 땅에 있는 形은 고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象은 막힘없이 흘러 다니니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하늘을 (고정되어 있는) 땅에 배당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 분야설의 전개 과정을 짚막하게 정리했는데, 처음 『周禮』에서는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지역을 서로 연결 짓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班固(32-92)는 자신이 전해들은 바를 『한서』에 기재하였고, 李淳風(602-670)이 陳卓(220-280) 등 여러 사람이 세상에 전한 바를 『진서』에 옮겼는데, 이것은 이미 반고의 그것과는 달랐다고 한다. 이어서 唐 一行의 분야설에서 견강부회하는 설이 많아졌지만 歐陽脩(1007-1072)는 『신당서』에 그 전문을 옮겼다고 한다. 서명응은 분야설의 전승 과정을 이와 같이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⁹⁶⁾

대개 <역대 중국의 사서에서> 그 말 [=분야설]의 타당함과 부당함을 논하지 않은 것은 한 시대의 문헌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분야도[分野圖]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나온 法象이다. 지금 중국과 동국의 두 법을 소개하니 군자의 선택을 기다린다.⁹⁷⁾

서명응의 “중국에서 조선을 보면 조선은 단지 미수·기수·두수에 해당하지

96) 『攷事十二集』 卷1, 東國分星(9책, 48-49면), “漢晉唐志, 皆以尾箕斗三宿爲朝鮮分野, 而朝鮮大儒徐起趙憲, 乃以渾天二十八宿, 剏爲東國朝鮮圖, 以傳諸後, 則世之信者半, 不信者半. 其不信者曰, 秦關之百二山河, 尙得井之一宿, 豈以我國三千里之地, 而盡占二十八宿乎. 其信者曰, 在地之形一定不易, 在天之象周流不滯, 故人之耳目, 不能爲手足, 手足不能爲耳目者, 形屬乎地也, 惟心在耳爲耳之心, 在目爲目之心, 在手足爲手足之心者, 象屬乎天也, 在人之天, 尙且無在而無不在, 況在天之天乎. 自中國視我國, 則我國但得尾箕斗三宿, 若自我國視我國, 則二十八宿各司八道分野, 觀二十四氣中外皆同, 但有遲蚤之分, 則可知此理之不誣也, 大抵星土之說, 如見於周禮, 而不言某星之爲某分, 故班固以當時所傳聞, 載於漢書, 李淳風又以陳卓諸人所流傳者, 載於晉書, 而與班固異, 至若唐一行分野說, 尤多穿鑿傳會, 然歐陽脩盡載全文於唐書.”

97) 『攷事十二集』 卷1, 東國分星(9책, 49면), “蓋無論其言之當否, 自不害爲一代之文獻故也. 況此分野圖, 卽我國初出之法象乎. 今著中東二法以俟君子擇焉.”

만, 조선에서 조선을 보면 28수 각각이 팔도를 맡게 된다. 24절기를 관찰해 보면 中外가 모두 같고 다만 빠르고 느린 차이만 있을 뿐이니 <‘조선에서 조선을 보면 28수 각각이 팔도를 맡게 된다’는> 이 이치가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언급을 보면 그가 동국분야설에 동의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서명응은 동국분야설의 ‘當否’가 아니라 ‘初出’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즉, 동국분야설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법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국분야설의 타당/부당의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겼다. 이처럼 서명응은 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다양한 설이 있는 경우에는 단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다양한 설명을 소개하여 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용 지식에 대한 관심: ‘數藝’를 중심으로

서명응 일가의 博學적인 학문 성향과 實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⁹⁸⁾ 이러한 학문적 특징은 『고사십이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算學[數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서양의 전통수학이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론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발전한 반면 동아시아의 전통수학은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⁹⁹⁾ 서명응이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산학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용 지식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읽을 수가 있다.

『고사십이집』의 ‘數藝’는 제7권 午集文藝에 樂藝 및 書藝와 함께 실려 있

98)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장원목, 2003 『保晚齋 徐命膺의 生涯와 學問: 학문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22; 조창록, 2003 『풍석 서유구에 대한 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문식, 2009 『楓石 徐有渠의 학문적 배경』 『진단학보』 108; 한민섭, 2010 앞의 논문; 구만옥, 2014 『徐有本(1762-1822)의 학문관과 自然學 담론』 『한국사연구』 166이 있고, “조선후기 달성서씨가의 학풍과 실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실학연구』 제11집(2006)에 실린 6편의 특집 논문도 참고된다.

99) 김종명, 2007 『고대 그리스 수학과 동양 수학』 『한국수학사학회지』 20(2), 56-57면.

다.¹⁰⁰⁾ ‘數藝’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서명응은 서론적인 乘除總敍에서 산학은 5가지의 기본적인 내용과 9가지의 최종 목표가 되는 계산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¹⁰¹⁾ 5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이란 ① 三才數位, ② 九九數目, ③ 加減乘除, ④ 平方立方, ⑤ 四率比例를 말하고, 9가지의 최종 목표가 되는 계산법이란 ① 方田數法, ② 粟布數法, ③ 衰分數法, ④ 少廣數法, ⑤ 商功數法, ⑥ 均輸數法, ⑦ 盈朒數法, ⑧ 方程數法, ⑨ 句股八線를 말한다. 이러한 목차 구성에는 ‘기초적인 산학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리고 각 소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數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오늘날의 기하나 방정식, 비례식, 삼각함수 등에 해당하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고사십이집』의 ‘數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筆算이다. 『고사십이집』에도 산학을 정리한 『算數要略』이 있긴 하나 주된 내용은 策算 소개이며, 필산은 『고사십이집』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다.¹⁰²⁾

근래에 산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그 수의 위치를 써서 서로 곱하고 나누는 데 이것을 筆籌라고 한다. 그 법이 자못 쉽고 빠른 까닭으로 지금 筆籌로써 식을 삼는다.¹⁰³⁾

서명응은 筆籌를 식으로 삼아 가감승제, 즉 사칙연산을 설명했다. 서명응은 필주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 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필주란 西算에서 기원한 筆算을 말한다.¹⁰⁴⁾ 아래 <그림 1>의¹⁰⁵⁾ 방식은, 아라비아숫자 대

100) 훗날 『林園經濟志』 『遊藝志』 ‘算法’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林園經濟志』 『遊藝志』는 최근 역주되어 출판되었고,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많이 참고하였다. 서유구(정진성·장우석·정명현 옮김), 2017 앞의 책.

101) 『攷事十二集』 卷7, 乘除總敍(10책, 37면), “故今以此五者, 冠于九章之首, 使初學之士, 得其所從入之門逕焉.”

102) 가와하라 히데키(안대옥 옮김), 2017 『조선수학사』, 예문서원, 334-335면.

103) 『攷事十二集』 卷7, 加減乘除(10책, 44면), “近代, 或不用籌以筆記其數位, 互相乘除因名筆籌. 其法, 頗簡易直捷, 故今以筆籌爲式.”

104) 가와하라 히데키(안대옥 옮김), 2017 앞의 책, 337면.

105) <그림 1>은 최은아, 2020 『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신 한자 숫자로 표기한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세로셈 알고리즘과 동일하다.¹⁰⁶⁾ 덧셈에서는 천의 자리에서 받아 올린 올림수 1만큼 만의 자리에 점 한 개를 찍은 모습이 보이고, 뺄셈에서는 만의 자리에서 받아 내린 내림수 1만큼 만의 자리에 점 한 개를 찍은 모습이 보인다. 곱셈은 오늘날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고, 나눗셈은 제수(7)의 위치가 피젯수(343)의 왼쪽이 아니라 위쪽에 적는 점이 다를 뿐, 계산의 순서는 정확히 동일하다.

서명응은 필산법을 『數理精蘊』에서 인용하였다.¹⁰⁷⁾ 淸 강희제 때 편찬된 『수리정운』은 中西算學의 회통을 표방한 책으로 산학에 관심을 지닌 조선후기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¹⁰⁸⁾ 서명응·서호수 부자 또한 『수리정운』으로 대표되는 서양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호수는 사물과 떨어져서 논의되는 수는 ‘虛數’이고 사물에 나아가 논의되는 수가 ‘眞數[實用의 수]’라고 하면서 『수리정운』을 높이 평가했다.¹⁰⁹⁾

덧셈		곱셈		나눗셈	
$\begin{array}{r} 一四五六五 \\ + 一七三五〇 \\ \hline 三一八九五 \end{array}$	$\begin{array}{r} 14,545 \\ +17,350 \\ \hline =31,895 \end{array}$	$\begin{array}{r} 二三四 \\ \times 36 \\ \hline 一四四 \\ 七二 \\ \hline 八六四 \end{array}$	$\begin{array}{r} 24 \\ \times 36 \\ \hline 144 \\ + 720 \\ \hline = 864 \end{array}$	$\begin{array}{r} 四九 \\ 7 \overline{) 343} \\ \underline{三〇} \\ 四三 \\ \underline{三〇} \\ 一三 \\ \underline{一四} \\ 〇 \end{array}$	$\begin{array}{r} 49 \\ 7 \overline{) 343} \\ \underline{-280} \\ 63 \\ \underline{-63} \\ 0 \end{array}$
뺄셈					
$\begin{array}{r} 二三六七二 \\ - 一六四八一 \\ \hline 〇七一九一 \end{array}$	$\begin{array}{r} 23,672 \\ - 16,481 \\ \hline = 7,191 \end{array}$				

<그림 1> 『고사십이집』 권7, ‘數藝’ 중 세로셈 사칙연산 필산 예시

계산법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1), 31면의 <그림 IV-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06) 최은아, 2020 위의 논문, 31면.

107) 가와하라 히데키(안대옥 옮김), 2017 앞의 책, 338-339면.

108) 구만옥, 2010 『마테오 리치(利瑪竇)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 실학연구』 20, 315면.

109) 위의 논문, 335면.

數에 대한 서명응과 서호수의 인식이 상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¹¹⁰⁾ 서호수가 易과 曆을 구분하며, 易學의 원리적 측면은 인정하였지만 이것을 천문학[曆]에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서호수의 수학과 실측을 강조하는 태도는 서명응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명응 일가는 實用에 대한 고민 속에서 博學적인 학문 성향을 지니게 되었고 그 방법론으로써 考證적인 태도를 견지했는데, 實用과 博學과 考證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數였다. 서명응 일가는 기존의 학문을 數를 통해 재편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설령 易에 대한 서명응과 서호수의 생각이 달랐더라도 數를 중시하는 태도는 서명응 일가의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고사십이집』의 편찬 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다. 『고사십이집』은, 『고사촬요』를 개정한 『고사신서』를 증보한 문헌이다. 먼저 『고사촬요』는 1554년(명종 9) 어숙권이 지은 類書이다. 어숙권은 중국의 『사림광기』나 『거가필용』과 같은 유서에 착안하여 事大交隣과 日用尋常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고사촬요』를 지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사대교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어숙권이 『고사촬요』를 사대교린 위주로 엮은 연유는 그의 행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숙권은 서얼 출신의 이문학관으로서 오랫동안 외교 관련 업무를 보면서, 후임자와 훗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인원을 위해 일종의 업무 참고서격의 유서로 『고사촬요』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촬요』는 자연스럽게 사대교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여기에 관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관제, 서식, 팔도거리, 지역별 특산물, 약방 등의 내용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고사촬요』는 어숙권이 처음 펴낸 이후 『고사신서』로 개정될 때까지 12차례에

110) 문중양, 1999 앞의 논문, 50면.

걸쳐 개정·증보되었다. 기본적으로 『고사촬요』가 과거의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엮은 문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최신 정보로의 증보가 필요했고, 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지속적인 개정·증보의 원인이었다. ‘지속적인 개정·증보’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데, 한편으로는 『고사촬요』가 상당히 인기가 높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며 간행하였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관인·유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였으나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문헌이 없어 개정·증보를 계속해 가면서라도 간행하였다는 의미도 된다. 18세기 이후로는 후자 쪽의 의미로 더 기울었고, 『고사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편찬되었다.

『고사신서』는 1771년(영조 47)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로 있으면서 『고사촬요』를 개정·증보하여 펴낸 문헌이다. 수 년 간의 편집과 교감을 거쳐 완성한 『고사신서』에는 천문, 지리, 관제, 문예, 건축, 농업, 원예, 과수, 의약 등 일상 및 관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이 폭넓게 수록되었다. 『고사신서』가 출간되자마자 “京鄕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서로 먼저 얻으려고 다투었으며 모두들 하루라도 이 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고사신서』를 온전히 서명응 개인의 편찬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를 겸하기 3년 전부터 『고사촬요』의 개정·증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서명응이 교서관 제조를 맡게 되면서 『고사신서』 편찬에 임하게 된 것이지, 개인의 의지로 편찬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사신서』는 官撰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고사십이집』은 『보만재총서』의 經史子集 중 集에 속해 있다. 총 12권 분량으로 『緯史』·『本史』와 함께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저술 중 가장 방대하다. 『고사신서』에서 『고사십이집』으로 증보되면서 체제와 내용 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고사신서』의 農圃門과 牧養門이 『본사』의 農史 및 蠶史로 분리되었고, 日用門 중 음식 관련 내용이 11권 五六으로 분리되었다. 또 지리, 역사, 成憲, 외교, 문예,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복과 음식, 의학에 관한 내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각 권의 맨 앞에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서문격의 글을 붙인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끝으로 전체적인 체제도 바뀌었다. 『고사신서』는 12문 15권 382항목 1,050면이고, 『고사십이집』은 12문 12권,

360항목 1,226면이다.

『고사십이집』의 각 권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子集 協紀의 주제는 천문이다. 연월일시와 계절, 절기, 방위, 定時, 中星, 晨昏, 각루 등 일상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천문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제2권 丑集 販章의 주제는 지리이다. 한성부를 포함하여 전국팔도의 지리적 위치와 별칭, 주요 山川과 土産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제3권 寅集 稽古의 주제는 역사이다. 단군조선 이래 삼한과 삼국, 고려의 역사 및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후의 陵寢과 忌日을 정리하였다. 제4권 卯集 建官의 주제는 관직제도이다. 동서반의 품계와 각 아문별 업무와 관직 구성, 전국팔도의 官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5권 辰集 成憲의 주제는 제도와 법규이다. 吏·戶·禮·兵·刑·工의 순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하였다. 제6권 巳集 訝交의 주제는 외교이다. 육·해상 사행로와 외교문서 양식, 사행별 方物, 외교의례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제7권 午集 文藝의 주제는 문예이다. 樂·書·數의 三藝를 정리하였다. 제8권 未集 經禮의 주제는 의례이다. 邦禮, 鄉禮, 家禮의 순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의례를 정리하였다. 제9권 申集 立豫의 주제는 군사이다. 서울과 지방의 성곽, 군사적 요충지, 繕械, 중앙과 지방의 軍制, 봉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10권 酉集 多能의 주제는 일상생활이다. 거주, 방화, 세탁, 붓, 벼루, 書法 등 집안의 온갖 살림살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제11권 戌集 五六의 주제는 음식이다. 과일, 채소, 죽, 차, 엿, 나물, 절임, 김장, 기름 짜는 법, 고기 익히는 법, 장 담그는 법, 식초 만드는 법, 술 빚는 법 등을 정리하였다. 제12권 亥集 千一의 주제는 의학이다. 의학이론보다는 처방이나 치료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의학 정보를 정리하였다.

『고사십이집』의 서술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명응은 미신적 속설에 대해 경계하였다. 서명응의 자연인식은 전통적인 상관적 사유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미신적 속설, 특히 拘忌나 方術에 관해서는 철저히 경계했다. 서명응은 사람이 拘忌를 좋아하면 巫瞽에 가깝게 될 뿐 아니라 마침내는 반드시 일을 해치고 나서야 그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서명응은 方術이라도 많이 보고 들어야 의심나고 위태로운 것을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돌

째, 서명응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선협적으로 단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의심된다’ 또는 ‘잘 모르겠다’, ‘문헌이 부족하다’와 같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명응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설명을 소개하여 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실용 지식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점은 제7권 午集文藝의 ‘數藝’를 통해 엿볼 수 있다. ‘數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기하나 방정식, 비례식, 삼각함수 등에 해당하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고사십이집』의 ‘數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筆算이다. 서명응은 筆算을 식으로 삼아 사칙연산을 설명했는데, 서명응은 筆算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 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필산은 숫자를 아라비아숫자 대신 한자로 표기한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세로셈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한편, 數에 대한 서명응과 서호수의 인식이 상반적이었던다는 평가가 있으나, 數를 중시하는 태도는 서명응 일가의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徐命膺, 『攷事十二集』, 『攷事新書』, 『保晚齋叢書』, 실용 지식, 類書

투고일(2021. 3. 16), 심사시작일(2021. 4. 12), 심사완료일(2021. 5. 13)

〈Abstract〉

The Compil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Gosasibijib(攷事十二集) in Late 18th Century

Kyung Seok-hyun *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compilation process of *Gosasibijib*(攷事十二集), its main contents, and important features of the narrative.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Gosasibijib*(攷事十二集) is as follows. *Gosasinseo*(攷事新書) is the book that revised *Gosachwalyo*(攷事撮要) and *Gosasibijib*(攷事十二集) is an additional book of *Gosasinseo* (攷事新書). *Gosachwalyo*(攷事撮要) was compiled by Eo Sook-gwon(魚叔權) in 1554. The main contents of the *Gosachwalyo*(攷事撮要) were related to diplomacy. Eo Sook-gwon(魚叔權), son of a concubine, worked on foreign affairs for a long time as a *Rimunhakgwon*(吏文學官). He wrote a work reference book, *Gosachwalyo*(攷事撮要) for his successor. In 1771, when Seo Myeong-eung(徐命膺) was a *jejo*(提調) in *Gyoseogwan*(校書館), he revised and expanded *Gosachwalyo*(攷事撮要) to publish *Gosasinseo*(攷事新書). *Gosasinseo*(攷事新書) was a literature that had been edited and communicated over the years and contained a wide range of knowledge necessary for everyday life and government life. However, *Gosasinseo*(攷事新書) was not a work of Seo Myeong-eung(徐命膺) alone. Because many people other than him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Gosasinseo*(攷事新書). That is why he revised *Gosasinseo*(攷事新書) and compiled *Gosasibijib*(攷事十二集). *Gosasibijib*(攷事十二集) was more like his personal work than *Gosasinseo*(攷事新書). With the expansion from *Gosasinseo*(攷事新書) to *Gosasibijib*(攷事十二集), there was significant changes in the system and content. *Gosasibijib*(攷事十二集) consisted of 12 volumes in total. The 1st volume was about astronomy, the 2nd geography, the 3rd history, the 4th office system, the 5th a code of law, the 6th diplomacy, the 7th art and letters, 8th rituals, 9th military, 10th daily life, 11th food, 12th medicine. *Gosasibijib*(攷事十二集).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Gosasibijib*(攷事

* Researcher,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十二集) are three: First, Seo Myeong-eung(徐命膺) was wary of superstitious myths in the *Gosasibijib*(攷事十二集). Second, he did not assert any uncertain facts and was very cautious. Third, he was very interested in practical knowledge.

Key Words : Seo Myeong-eung(徐命膺), *Gosasibijib*(攷事十二集), *Gosasinseo*(攷事新書), *Bomanjaechongseo*(保晚齋叢書), practical knowledge, encyclopedia (類書)